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관한 상인 등 의견 청취 및
안전시설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36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관한 상인 등 의견 청취	2
2.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	6
※ 참고자료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용갑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5. 8. 7.
3. 회부연월일 : 2025. 8.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에 전기·가스·화재·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등을 지원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월 22일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사고 당시 959개 점포에 화재감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구 서문시장 등 역시 화재사고 이후 화재감시시스템을 설치했으나 잦은 시스템 오작동으로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인 등의 의견 청취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 시 시정요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 등에 안전시설물등을 설치·개량·보수할 때 상인

과 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상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도록 하며, 부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Ⅲ. 검토의견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관한 상인 등 의견 청취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공동시설인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상인 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0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 ----- ----- ----- ----- ----- ----- ----- ----- -----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 4. (생략)

② (생략)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전기·가스·화재·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는 등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

-----전기·가스·화재·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이하 “안전시설물”이라 한다)-----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안전시설물-----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시설자재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용품을-----
-----노력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비 가리개 및

<신 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u>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의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u> <u>1.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u> <u>2. 제65조에 따른 상인회</u> <u>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⑦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비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에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¹⁾를 사용하는 등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전통시장의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화재알림시설 등 안전시설물의 고장이나 파손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관리 비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⑥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용 발생,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 등 설치 후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바,²⁾

개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개량·보수할 때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용품³⁾(참고자료1)을 사용하도록 하고, 상인 등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화재안전 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상인 등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인 등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는데,

2) 관련기사

- 영남일보, “대형화재 막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는 안된다?”, 2024.1.19.자
(URL: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40118010002396>)
- 전북도민일보,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AS’는 누가 하나?...고장 시 보수비 전액 상인 ‘몹’ 문제 키운다”, 2024.1.21.자
(URL: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5186>)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6. (생략)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상인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개량·보수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는 규정과 그 예외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조문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상인의 수요에 부합하는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의견 청취 절차를 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의견 청취의 세부적인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시설물 점검 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점검 결과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4) <참고 입법례>

「농어촌정비법」

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세우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의 기밀사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부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화재·풍수해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물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항목이나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① 시설자재의 난연 성능 부합 여부, ② 소방용품의 형식승인⁵⁾ 여부, ③ 성설시공 및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관계 법령 위반 및 부설시공 등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 철저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방법·순서·합격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한 사후점검을 통하여 안전시설물의 고장이나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⁶⁾

중소벤처기업부는 적정한 안전시설물의 설치를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의 부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안전점검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설시공 등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안전점검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5

6) <참고 입법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 ① 국가유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유산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현장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참고자료】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소방용품(제6조 관련)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
3.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및 간이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 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 가. 소화약제[별표 1 제1호나목2) 및 3)의 자동소화장치와 같은 호 마목3)부터 9)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 나.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